

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분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규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서울대학교중앙도서관(이하 “도서관”이라 한다)규정 제34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서관 분관의 설치기준, 분관설치 이후의 도서관과의 관계정립 및 분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기준) 분관을 설치하고자하는 대학(원)은 전임직원 3명 이상, 분관사무실, 참고열람실, 서고 및 열람실 등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열람석은 학생 정원의 15%이상, 장서수는 학생 1인당 10책 이상을 보유하여야 한다.

제3조(도서관과 분관과의 관계) ① 분관 설치는 도서관의 기능을 현저히 저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.

② 각 분관은 그 특성 제고를 위한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, 업무의 표준화와 자료의 활용에 있어 도서관과 공유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.

제4조(분관의 기능) 분관은 수서, 정리, 이용, 보존업무를 관장한다. 다만, 농학분관과 의학분관 이외의 분관은 그 업무의 일부를 도서관이 대행할 수 있다.

제5조(분관에 대한 지원) ① 도서관장은 신설된 분관에 적어도 사서직 1명을 배치한다.

② 도서 구입비와 도서관 전산화 경비는 도서관에서 지원하며 그 이외의 운영경비는 소속 대학(원)장이 지원한다.

제6조(자료의 이관 범위) 도서관이 소장하는 자료 중 분관이 인수하기를 원하는 자료의 이관은 타 학문분야의 동의를 거쳐 도서관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분관운영위원회 등)분관장은 중앙도서관규정에 의거 분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, 중앙도서관장에게 분관운영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(시행) 이 규정은 1994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.